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서민 등에 대한 택배 또는 우편물 이용 요금 지원〉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16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도서민 등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또는 우편물 이용 요금 지원 근거 마련 ..	3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5. 6. 23.
3. 회 부 일 : 2025. 6.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지역 주민은 택배 등의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 배송비에 더해 물류서비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배송이 지연 및 지체되는 등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물류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한국소비자원의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2020.12.)에 따르면 전남 신안 등 도서지역 주민이 생활물류에 대한 배송을 받는 경우 내륙 지역에 비해 평균 5배의 배송비를 더 지불하고 있는 상황임.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2023년부터 섬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섬 주민들에게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섬 지역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불평등 해소를 위해 섬 지역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

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4).

Ⅲ. 검토의견

1. 도서민 등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또는 우편물 이용 요금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도서지역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서민과 도서지역
소상공인이 생활물류서비스(택배)나 우편물을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4(도서지역에 대한 생활물 류서비스 등 증진 지원)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도서민과 도서지 역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도 서지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에 대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제2조에 따른 생활물류 서비스 이용에 드는 요금 및

	「우편법」 제1조의2에 따른 우편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요금의 구체적인 범위 및 지원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 생활물류 대부분이 해상교통으로 운송되고 있는 도서민 및 도서지역¹⁾의 소상공인이 생활물류서비스²⁾(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배송비에 더해 물류서비스업체에서 도서지역에 대해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추가 배송비를 부담³⁾하고 있어 지역 간 생활물류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2020. 12.)⁴⁾」에 따르면 도서지역

1) 도서지역의 경우 섬 지역의 특성(유인도서(행안부), 무인도서(해수부), 특수도서(행안부, 해수부, 환경부))에 따라 부처별로 관리지원업무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섬은 3,383개 유인도서는 465개, 무인도서는 2,918개임

※ 출처 :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국가권익위원회, 2022.5.)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중형 상자(20kg)를 도서지역으로 발송한다고 가정할 때,

- (내륙→섬) 내륙 상품을 섬 주민이 배송 받는 경우 기본배송비(5,000원) + 도선료(5,000원) + 영업소 위탁비(1,000원)를 부담하고 있고,

- (섬→내륙) 섬 주민이 내륙으로 상품을 발송하는 경우 기본배송비(5,000원) + 도선료(1,000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출처 :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국가권익위원회, 2022.5.)

4) 제주녹색소비자연대에서 실시한 '2020년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부담 2차 실태조사'(2020년 7~12월)에 따르면 제주지역 배송비가 육지권에 비해 평균 6.1배 높고, 제주 외 타 도서지역은 평균 7.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주민이 생활물류에 대한 배송을 받는 경우 일반 내륙지역에 비해 평균 6.1배에서 7.5배의 배송비를 더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양수산부는 도서지역과 내륙 간 생활물류비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서지역 주민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개요 】

구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사업목표	지리적 여건으로 육지에 비해 높은 택배비를 부담하고 있는 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 택배비 = 기본 배송비 + 추가 배송비(도서·산간 지역에 부과되는 할증요금)								
지원대상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는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포함)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개인 * '25년 지원 대상 지역 및 인구 : 전국 7개 광역시·도 310개 섬, 약 76만 7천여명								
신청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 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우편법」 제14·15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우편물(추가 배송비 없음) 이용 시 유통사·판매자 등 개별화주가 별도로 부과하는 섬 지역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경우								
지원형태 및 금액	(재원조달) ('23년 시범사업) 65억(국비) → ('24년) 총 130억(국비 65억 + 지방비 65억) → ('25년) 총 50억(국비 25억 + 지방비 25억) (지원금)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지자체별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사업추진 프로세스	<table><tr><td>계획 수립 등 준비</td><td>지원금 신청</td><td>지원금 지급</td></tr><tr><td>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수립 -예산 교부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 홍보</td><td>⇒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장에 게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td><td>⇒ 택배이용정보, 증빙자료 등 확인 후 지자체별 1인당 지원 한도액 등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인 계좌로 입금</td></tr></table>			계획 수립 등 준비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수립 -예산 교부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 홍보	⇒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장에 게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택배이용정보, 증빙자료 등 확인 후 지자체별 1인당 지원 한도액 등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인 계좌로 입금
	계획 수립 등 준비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수립 -예산 교부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 홍보	⇒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장에 게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택배이용정보, 증빙자료 등 확인 후 지자체별 1인당 지원 한도액 등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자료: 해양수산부

□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2조⁵⁾를 근거로 하고 있어 이를 사업의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에는 미흡하며, 지속적인 국고 지원을 위해서는 명확한 지원 근거 법령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⁶⁾.

□ 이에 도서지역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불평등 해소를 위해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방안(2022. 5.)”을 통해 섬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물류의 해상운송비용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에 섬 주민의 생활물류해상운송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을 의결한 바 있음.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국고 지원의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근거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개선요구를 받은 바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하기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⁷⁾”는 같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인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중개하는 배달대행 또는 퀵서비스와 같은 사업으로,

도서민 등에게 요금을 지원하려는 대상이 택배서비스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⁸⁾

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이하 “드론”이라 한다)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이하 “실외이동로봇”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

4.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받은 자

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①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화물자동차 운송

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의 “「우편법」 제1조의2에 따른 우편요금⁹⁾”은 「우편법」에 따른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에 모두 해당되는 의미이나, 도서민 등에게 요금을 지원하려는 대상이 소포우편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으로 구체화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9

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것
2. 시설·장비 및 영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화물의 집화·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 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9) 「우편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란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4. “우편요금”이란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참고 1

섬 지역 택배·소포서비스 제공 및 요금 현황

※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섬진흥원에서 작성한 「섬 지역 택배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22.12)」 중 발췌

구분		세부내용								
섬 지역 택배서비스 제공 현황		구분	전체 유인섬		우체국 소포 및 민간택배사		우체국 소포		배송 불가	
			개소	비중(%)	개소	비중(%)	개소	비중(%)	개소	비중(%)
		합계	464	100.0	208	44.8	201	43.3	55	11.9
* 국민권익위원회(2018)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섬진흥원 연구진 제작성										
주요 택배사 요금	CJ 대한통운(주)	구분	극소형		소형		중형		대형	
		크기	80(x+y+z)cm		100(x+y+z)cm		120(x+y+z)cm		160(x+y+z)cm	
		무게	2kg 이하		5kg 이하		15kg 이하		25kg 이하	
		동일권역	5,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타 권역	6,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	
		제주운임	9,000원		11,000원		12,000원		13,000원	
		도서지역	8,000~12,000원		10,000~14,000원		11,000~15,000원		12,000~16,000원	
	* CJ대한통운(주)(https://www.cjlogistics.com/ko/support/guide/parcel?searchUseInfoSubCd=E001008 , 2022. 8. 31.)									
	한진택배	구분	초소형		소형		중형		대형	
		크기	80cm이하		100cm이하		120cm이하		160cm이하	
		무게	3kg이하		5kg이하		15kg이하		20kg이하	
		동일권역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타 권역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제주운임	8,000원		9,000원		10,000원		11,000원	
		도서지역 (제주 도서지역)	11,000원 (13,000원)		12,000원 (14,000원)		13,000원 (15,000원)		14,000원 (16,000원)	
	* 한진택배(https://www.hanjin.com/kor/CMS/Contents/Contents.do?mCode=MN130 , 2022. 8. 31.)									
	롯데 글로벌로지스	구분	소형		중형		대형			
		크기	110cm이하		130cm이하		160cm이하			
		무게	5kg이하		15kg이하		20kg이하			
		동일권역	5,000원		6,000원		7,000원			
		타 권역	6,000원		7,000원		8,000원			
제주권역 (항공료 포함)		8,000원		9,000원		10,000원				
* 롯데글로벌로지스 택배 요금 조회/안내(https://www.lottegloballogis.com/home/reservation/feeinfo/write , 2022. 7. 12.)										
로젠택배	구분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부피	0.037m³ X+Y+Z=100cm		0.064m³ X+Y+Z=120cm		0.101m³ X+Y+Z=140cm		0.151m³ X+Y+Z=160cm		
	무게	5kg 이하		10kg 이하		20kg 이하		25kg 이하		
	동일권역	6,000원		7,000원		9,000원		12,000원		
	타 권역	7,000원		8,000원		10,000원		13,000원		
	제주운임	기본운임+추가운임(중량에 따라 차등 적용)								
	* 로젠택배 요금안내(https://www.ilogen.com/m/personal/chargeInfo , 2022. 7. 12.)									
우체국 소포	< 창구 접수시 >									
	구분	~3kg (80cm)	~5kg (100cm)	~7kg (100cm)	~10kg (120cm)	~15kg (120cm)	~20kg (120cm)	~25kg (120cm)	~30kg (160cm)	
	익일 배달	4,000원	4,5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10,000원	12,000원	
	제 주 익일 배달	6,500원	7,000원	7,500원	8,500원	9,500원	10,500원	12,500원	14,500원	
	D+2일 배달	4,000원	4,5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10,000원	12,000원	
	< 방문 접수시 >									
	구분	~5kg(80cm)	~10kg(100cm)	~20kg(120cm)	~30kg(160cm)					
	익일 배달	5,000원	8,000원	10,000원	13,000원					
	제 주 익일 배달	7,500원	10,500원	12,500원	15,500원					
	D+2일 배달	5,000원	8,000원	10,000원	13,000원					
* 인터넷우체국 요금안내(https://parcel.epost.go.kr/parcel/use_guide/charge_1.jsp , 2022. 8. 31.)										

참고 2

[해수부 시행중]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리적 여건으로 육지에 비해 높은 택배비를 부담하고 있는 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 택배비 = 기본 배송비 + 추가 배송비(도서·산간 지역에 부과되는 할증요금)

※ 사업예산 : ('23년 시범사업) 65억(국비) → ('24년) 총 130억(국비 65억+지방비 65억) → ('25년) 총 50억(국비 25억+지방비 25억)

□ 지원대상

-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는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포함)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개인**

* '25년 지원 대상 지역 및 인구 : 전국 7개 광역시·도 310개 섬, 약 76만7천여명

□ 신청요건

- 지원대상자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우편법」 제14·15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우편물(추가 배송비 없음) 이용 시 유통사·판매자 등 개별화주가 별도로 부과하는 섬 지역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경우

□ 지원금 지급 절차

- (지원금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 신청서 및 택배비 지불·이용완료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 (지원금)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지자체별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지급금액(택배 송장번호 1건당)	증빙자료
3천 원	●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택배비 지불 내역 ● 운송장 사본(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 (상한 없음)	● 추가 배송비가 표기된 택배비 지불 내역 ● 운송장 사본(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 (대상자 확정) 읍·면·동에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신청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지급 대상으로 확정
- (지원금 지급)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신청인 계좌로 지급